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2일

행정·재무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3년 11월 6일

나. 제출자: 강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3년 11월 10일

라. 상정일자: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의결(2023.11.22.)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 □ 제안이유

강서구에서 구독자 중심의 맞춤형 구정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정기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양방향 소통의 참여형 소식지 제작을 위한 어린이기자 위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독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소식지 제작을 추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 변경
- 나. 조례명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신문 → 소식지)
- 다. 소식지 종류별 명칭 명시로 어린이소식지 발간 근거 마련(안 제2조)
- 라. 구정소식지 발행일 조정 및 어린이소식지 발행 조항 신설(안 제4조)
- 마. 어린이기자 위촉 근거 마련(안 제8조)
- 바. 광고수수료 기준 정비에 따른 별표 개정(별표 1)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9.27. ~ 2023.10.17.) 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미반영
    - 현재 편집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음(외부 위촉 위원 구성 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거 성별 균형을 고려할 예정)

##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장석현)

### 가. 개정 취지

- 본 개정안은 구정 홍보를 위해 정기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의 종류와 명칭을 구체화하고 어린이소식지의 발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통이 가능한 참여형 소식지를 제작하고 구독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임

### 나. 주요 내용

- 안 제2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발행하는 소식지의 종류와 명칭을 기존 “강서까치뉴스”에서 “구정소식지” 및 “어린이소식지”로 구체화하여 규정함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제호) 신문의 제호는 “강서까치뉴스”로 한다	제2조(종류 및 명칭) ①서울특별시 강서구가 발행하는 소식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서구 구정소식지(이하 “구정소식지”) 2. 강서구 어린이소식지(이하 “어린이소식지”) ②소식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지의 명칭은 “강서까치뉴스”로 한다 2. 어린이소식지의 명칭은 “강서꿈동산”으로 한다

○ **안 제4조**는 구정소식지 및 어린이소식지의 발행일을 조정하여 명시함

현 행	개 정 안
제4조(발행일) 신문은 <u>매월 25일</u>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제4조(발행) 구정소식지는 <u>월 1회</u> , 어린이소식지는 <u>분기 1회</u>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 **안 제8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는 조항에 어린이기자 위촉 근거를 신설하여 소통이 가능한 참여형 소식지 제작을 도모하였음

#### 다.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구정 홍보를 위해 정기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어린이기자 위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소식지 제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명 변경에 따른 용어의 정비 및 광고수수료 기준에 맞게 별표 서식을 개정하는 등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소식지 발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구독자 중심의 맞춤형 구정 홍보 강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 법령 1부.

**□ 「지방자치법」**

-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